

문서번호	인권담당관-2251	시 민			
결재일자	2013.3.21.	주무관	인권협력팀장	인권담당관	서울혁신기획관
공개여부	대시민공개	이재복	김숙자	구종원	03/21 조인동
방침번호					

## 2013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



2013. 3

**서울혁신기획관**  
(인권담당관)

## 사전 검토항목

∴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'무 ■'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검토항목	검 토 여 부 (■ 표시)
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	● 시 민 : 유 ■ ( 우수사례 성과보고회 개최 ) 무 □
	● 이 해 당 사 자 : 유 ■ ( 인권단체 ) 무 □
	● 전 문 가 : 유 ■ ( 사업심사위원회 ) 무 □
	● 음 브 즈 만 : 유 □ ( ) 무 □
법 령 및 기 타 고 려 사 항	● 법 령 규 정 : 교통 □ 환경 □ 재해 □ 기타 ■ ( 인권기본조례 ) 무 □
	● 기 타 사 항 : 고용효과 ■ 노동인지 □ 균형인지 □ 홍보 □ 취약계층 ■ 성인지 ■ 장애인 ■ 디자인 □ 갈등발생 가능성 □ 유지관리 비용 □ 무 ■
타 자 원 의 활 용	● 중 앙 부 처 : 유 □ ( ) 무 ■
	● 민 간 단 체 : 유 □ ( ) 무 ■
	● 기 업 : 유 □ ( ) 무 ■
관 계 기 관 및 단 체 협 의	● 관 계 기 관 : 유 □ ( ) 무 ■
	● 민 간 단 체 : 유 □ ( ) 무 ■
	● 시 산 하 기 관 : 유 □ ( ) 무 ■

# 2013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

인권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활동을 행정적·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생활 속 인권사업을 활성화하고 인권단체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

## I 추진개요

### 추진근거

-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13조(인권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)

① 시장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,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 
②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」에 따른다.

-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,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, 지방재정법,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

### 추진방향

- 공모를 통한 사업 선정으로 인권단체 참여기회 극대화
  -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성과 노하우를 확보한 인권단체 참여 유도
- 내실있는 관리로 민간단체 역량강화 및 사업부실 방지
  - 회계교육, 전문가 컨설팅, 성과보고회를 통한 우수사례 횡단전개 등

### 사업개요

- 총 예산 : 200백만원
  - 1차 지원(120백만원), 2차 지원(80백만원)
- 사업분야 : 2개 분야(자유제안·市 지정분야)
- 공모회수 : 연 2회(3월, 5월)
- 사업기간 : 2013. 5월~2013. 11월

## II 추진계획

### 1 지원사업 선정

#### ○ 자유제안분야 : 민간단체 자율 주제 선정

- 인권교육·문화·연구 등 시민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새로운 개발 및 활성화가 필요한 사업

#### ○ 시 지정 분야

- 인권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시 차원에서 새로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분야 등

연번	사업명	주요내용
1	여성장애인 인권 증진	- 여성장애인의 결혼생활(임신·자녀양육·부부관계 등)에서 겪는 문제점 개선사업 · 예시) 산전·산후 정보나 의료서비스, 부부·자녀갈등 상담지원 등
2	외국인(미등록포함) 근로자 인권 증진	- 외국인 근로자(미등록자 포함)가 생활 속에서 겪는 언어, 소송 등 문제해결 지원사업 · 예시) 병원진료, 법원, 경찰서 등 통역 동행사업, 소송법률 지원 등
3	돌봄노동자 인권 증진	- 돌봄노동자의 건강한 일터를 위한 건강증진 및 인식개선 지원사업 · 예시) 간병인, 가사도우미, 아이돌보미 등에 대한 건강서비스, 상담지원 등
4	인권문화 조성 사업	- 시민인권의식 확산 및 인권문화 조성 지원사업 · 예시) 서울지역(남산 옛 안기부 터 포함)인권탐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

### 2 지원기준 및 응모자격

#### ○ 지원기준 : 단체당 1개 사업, 사업비 지원 원칙

-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경비 등은 지원하지 않음

※ 사업규모 1개 사업당 20백만원 이내

#### ○ 지원대상

-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등록 소재지가 꼭 서울일 필요는 없으나, 지원 대상 사업이 서울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과 직결된 사업이어야 함.

- 지원사업을 수행할 인적·물적 능력을 갖춘 단체

※ 비영리민간단체 :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

〈 제외사업 〉

- ◆ 동일한 주제로 타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금 등에서 지원받고 있는 사업
  - 중복 수혜 시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응모자격 제한
- ◆ 공모주제와 연관성이 낮거나 단체설립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사업
- ◆ 일회성 행사, 단체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설립 기념행사, 연구용역, 단체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사업 등

### 3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

#### ○ 공 고 : 3월, 5월

- 공고 및 홍보 방법
  - 서울시보 및 서울시 NGO협력센터 홈페이지 게재
  - 서울시에 등록된 인권활동 비영리 단체 대상 안내문 발송
- 주요내용 : 신청대상단체, 지원사업 분야, 신청서 교부·접수기간 등

구 분	1차 공모(별첨1)	2차 공모(별도계획 수립)
공 고 일 시	'13. 3	'13. 5
공 모 예 산	120백만원	80백만원
사 업 기 간	'13. 5 ~ '13. 11(7개월)	'13. 7 ~ '13. 11(5개월)

#### ○ 사업설명회 개최

- 일 시 : '13. 4. 4(목) 13:00 ~ 15:00
- 장 소 : 본관(신청사) 3층 소회의실2
- 방 법 : 공모기간 중 신청 및 관심단체 대상으로 실시
- 주요내용 : 사업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, 사업 분야, 심사·선정 방법 등

#### ○ 인터넷 신청 및 접수

- 기 간 : '13. 4. 1(월) ~ 4. 18(목)
- 방 법 : 서울시 NGO협력센터 홈페이지 (<http://club.seoul.go.kr/ngo>)에  
인권단체 공모사업 접수방 개설 운영(정보화기획담당관 협조)
- 제출서류 : 신청서, 단체소개서, 사업 계획서, 단체(법인)등록증 사본 등

#### 4 사업심사 및 단체선정

○ 사업심사위원회 구성 : 7명 내 · 외부 위원

- 내부위원 : 1명(서울혁신기획관)
- 외부위원 : 6명(시의원 1명, 전문가 5명)

○ 선정방법 : 2단계 심사

- 1단계(요건심사) : 신청단체 적격심사(제출서류 구비 및 등록여부 확인)
- 2단계(내용심사) : 심사채점항목에 의한 사업별 심사

항 목	배 점	세 부 심 사 내 용
사업계획의 적 합 성	40	20 ① 인권증진을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한 사업인가
		15 ② 사업내용과 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가
		5 ③ 인권현안을 감안,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 또는 새로운 인권영역개발 사업인가
사 업 의 파 급 효 과	35	15 ④ 본 사업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를 미치는가
		10 ⑤ 사업성고가 수행단체 등의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가
		10 ⑥ 인권정책에 미치는 효과가 얼마나 지속적인가
단 체 의 사 업 수 행 능 력	15	5 ⑦ 인력이 해당 사업수행에 책임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인가
		5 ⑧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
		5 ⑨ 최근 활동실적이 어느 정도 활발한가
예산편성의 적 정 성	10	5 ⑩ 사업내용과 관련, 사업비의 산출내역, 규모는 적절한가
		5 ⑪ 신청예산이 근거규정에 적합하게 편성되어 있는가

○ 선정단체 결과발표 : 市NGO 협력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된 단체 개별 통보

## 5 선정단체 교육 및 보조금 교부

### ○ 대표자 및 실무자 교육 : 보조금 집행지침 및 회계처리 방법 등

#### 〈보조금 관리〉

- ◆ 예산집행절차 : 단위사업 추진계획 → 보조금카드 결제 → 보조금시스템의 지출결의서 작성·결제 → 납품·검수 → 회계장부 정리
- ◆ 보조금 관리 : 우리은행에서 발급한 보조금 전용통장, 서울시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사업 결제 전용카드(서울시⇔우리은행 협약 체결,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)

※ 인재개발원에서 '13년 市 공모사업 선정단체대상으로 시비보조금 회계실무과정 운영 예정

### ○ 보조금 교부

#### ① 선정업체 실행계획서 제출

- 지원 결정금액 및 사업내용에 맞추어 예산집행 실행계획서 수정·제출

※ 예산편성 기준 및 항목별 지출한도액 준수, 사업계획 변경이나 결정 금액 변경시 자부담 비율 변경 불가

※ 사업계획서상의 지원금액과 지원결정금액이 변동이 없을 경우 실행계획서는 사업계획서로 같음

#### 〈 보조금 제외 예산 〉

- ◆ 시설비·수선비·시설부대비·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
- ◆ 상근직원 인건비·사무실임대료·사무용 집기구입·공과금·전화요금 등 단체운영경비
- ◆ 연구기관, 대학(교)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(용역성 경비)
- ◆ 불우이웃돕기성금, 진료비 지급, 시상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
- ➡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 처리

#### ② 약정체결 : 실행계획서 제출 후 보조금 교부 전

- 사업신청서와 실행계획서 비교 검토 후 약정체결

※ 교부신청서, 실행계획서, 보조금관리통장 사본, 보조금전용 체크카드, 이행보증보험증권(자부담), 약정서 2부, 청렴이행서약서, 단체직인 등

③ 보조금 교부 : 2회 분할 교부 원칙

- 1차 : 약정체결 후 지원액의 70% 교부

- 2차 : 중간평가 후 지원액의 30% 교부

※ 사업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1차 전액 교부,

※ 지원사업으로 결정되기 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소급 보전 불가

〈 보조금 교부조건 〉

- ◆ 보조금 교부 신청 서류 : 교부신청서, 실행계획서, 보조금관리통장, 사업계획 변경 시 승인사항 등
- ◆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준수 : 영수증 처리방법, 일반회계와의 구분, 항목별 보조금 사용한도액 등
- ◆ 보조금 교부 중지 및 환수 : 용도외 사용, 허위기재, 부정한 방법 등

⑥ 사업평가 및 성과보고회 개최

○ 사업보고서 제출

- 1차 보고서 : '13. 8. 12(월)

- 2차 보고서 : '13. 11. 29(금)

○ 사업평가 실시

- 중간평가(서면평가, 인터뷰, 현지 확인 등 병행)

· 내 용 : 사업계획 이행여부, 회계처리 적정성, 애로사항 및 문제점 등

· 조 치 : 2차 보조금 교부 여부 결정

- 최종평가(사업보고서에 의한 서면평가)

· 내 용 : 사업목적 달성 및 사업성과, 회계처리의 정당성 등

· 조 치 : 다음해 사업선정 시 반영

〈 사업 평가단 운영 〉

◆ 구 성 : 10명 내외(공익사업선정위원, 시민단체 대표, 교수, 법인대표 등)

※ 행정과 「공익사업평가단」 인력풀 활용

◆ 운 영 : 평가단 2인 1조 각 단체 현장방문 컨설팅 및 중간, 최종평가 등

※ 부진사항 : 원인 및 결과를 분석하여 대책 마련, 원인분석 피드백

※ 우수사례 : 사례발표 및 타 기관 전파, 언론 홍보 등



○ 사업비 정산

- 시 기 : '13. 12월
- 내 용 : 집행잔액 파악,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 등 보조금 사용 회계검증에 중점
- 조 치 : 부당집행액 및 불용액 회수

○ 우수사례 성과보고회 개최

- 일 시 : '13. 12월 중(세계인권선언 기념주간 중)
- 참 석 : 인권전문가, 시민단체 및 시민, 공무원 등
- 내 용 : 市 공모사업 분야별 평가결과 우수사업 사례발표

7 추진일정(안)

추진절차		공모일정	
		1차	2차
1	사 업 공 고	3.28(목)	5.2(목)
2	사 업 설 명 회 개 최	4.4(목)	5.8(수)
3	사 업 접 수	4.1(월)~4.18(목)	5.6(월)~5.31(금)
4	사 업 심 사	4.25(목)	6.5(수)
5	선 정 결 과 발 표	4.29(월)	6.10(월)
6	실 행 계 획 서 제 출	5.3(금)	6.21(금)
7	약 정 체 결	5.8(수)	6.17(월)
8	1 차 보 조 금 교 부	5.10(금)	6.19(수)
19	선 정 단 체 회 계 교 육	5월 중순	-
10	1 차 사 업 보 고 서 제 출	8월 중순	-
11	중 간 평 가	8월 말	-
12	2 차 보 조 금 교 부	9월 초	-
13	사업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	'13. 11월 중순	
14	최 종 평 가	'13. 11월 말	
15	사 업 정 산	'13.12월	
16	우 수 사 례 성 과 보 고 회 개 최	'13.12월	

※ 위 일정은 사업 실행 시 다소 변경 가능

### Ⅲ 행정사항

소요예산 : 207,000천원

- 공모사업비 : 200,000천원(민간경상보조)
- 공모사업 관리 : 7,000천원(사무관리비)

붙임 : 2013년 제1차 서울특별시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공고(안) 1부. 끝.

**별첨 1**

**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3 - 호**

**2013년 제1차 서울특별시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공모 공고**

서울특별시에서는 「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」 제13조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의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공모를 공고합니다

2013. 3. 28.

서울특별시장

**1. 지원사업 분야**

분야	사업내용		
자유제안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인권교육, 인권문화, 인권연구 등 시민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새로운 개발 및 활성화가 필요한 민간단체 자유제안 사업</li> </ul>		
市 지정분야	연번	사업명	주요내용
	1	여성장애인인권증진	- 여성장애인의 결혼생활(임신·자녀양육·부부관계 등)에서 겪는 문제점 개선사업 · 예시) 산전·산후 정보나 의료서비스, 부부·자녀갈등 상담지원 등
	2	외국인(미등록포함)근로자인권증진	- 외국인 근로자(미등록자 포함)가 생활 속에서 겪는 언어, 소송 등 문제해결 지원사업 · 예시) 병원진료, 법원, 경찰서 등 통역 동행사업, 소송법률 지원 등
	4	돌봄노동자인권증진	- 돌봄노동자의 건강한 일터를 위한 건강증진 및 인식개선 지원사업 · 예시) 간병인, 가사도우미, 아이돌보미 등에 대한 건강서비스, 상담지원 등
5	인권문화조성사업	- 시민인권의식 확산 및 인권문화 조성 지원사업 · 예시) 서울지역(남산 옛 안기부 터 포함)인권탐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	

## 2. 신청자격

-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등록 소재지가 꼭 서울일 필요는 없으나, 지원 대상 사업이 서울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과 직결된 사업이어야 함.
- 지원사업을 수행할 인적·물적 능력을 갖춘 단체
  - ※ 비영리민간단체 :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

## 3. 사업추진기간 : 2013. 5월 ~ 2013. 11월(7개월)

## 4. 지원규모 및 심사

지원사업 분야	지원규모	심사·선정방법
자유 제안분야	단체별 1개 사업 (사업별 2천만원이하)	서류 심사
市 지정분야	단체별 1개 사업 (사업별 2천만원이하)	서류 심사

### ※ 지원제외 사업

- 동일한 주제로 타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금 등에서 지원 받고 있는 사업  
(※ 중복 수혜시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응모자격 제한)
- 공모 주제와 연관성이 낮거나 단체설립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사업
- 일회성 행사, 단체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설립 기념행사, 단체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사업 등

## 5. 신청기간 및 방법

- 신청기간 : 2013. 4. 1(월) 09:00 ~ 4. 18(목)18:00까지
  - ※ 마감일(2013.4.18)은 신청폭주로 인터넷 접속장애 예상되므로 조기신청 접수 요망  
(18:00 이후 접수 자동 차단)
- 신청방법 : 인터넷(<http://club.seoul.go.kr/ngo>) 접수만 가능
  - ※ 접수방법 : 서울시 NGO협력센터(<http://club.seoul.go.kr/ngo>) 회원가입  
(기회원은 추가가입 불필요) → 회원 로그인 → 화면 좌측(서울시 공모사업 부서별  
⇒ 인권담당관 : 접수)

## 6. 제출서류(서울시 NGO협력센터 홈페이지 「 '13년도 제1차 인권사업 모집공고」 양식 게재)

- 인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신청서 1부
- 단체소개서 1부
-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1부
-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(스캔화일) 1부  
(비영리법인 허가증 및 세무서 발급 고유번호증은 대상이 아님)

## 7. 사업설명회 개최

- 일 시 : 2013. 4. 4(수) 13 : 00
- 장 소 : 서울시청 본관(신청사) 소회의실2(3층)
- 주요내용 : 사업유형, 심사·선정방법, 사업계획서 작성 회계처리기준 등  
※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우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8.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결과 발표

- 심사·선정 : 별도 사업심사위원회 구성
- 심사기준 : 사업과제 적합성, 사업단체의 수행능력, 신청예산의 적정성 등
- 발표일시 : 2013. 4. 29(월)예정
- 발표방법 : 서울시 NGO협력센터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단체 개별 통지

## 9. 선정단체 설명회 개최

- 일시 및 장소 : 선정단체에 별도 통지
- 참석대상 : 선정단체 대표자 및 실무자
- 주요내용 : 보조금 교부 신청 방법, 회계처리기준 등

## 10. 보조금 교부 및 평가, 사업정산

- 선정된 민간단체와 우리시가 사업추진약정(이행보증보험 제출)을 체결함으로써 효력 발생
- 보조금은 1차, 2차로 나누어 교부
- 중간평가 및 사업 완료 후 종합평가를 실시하고, 평가결과는 2014년도 지원 사업 결정시 반영
- 2013. 11. 29.까지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, 성과평가서 제출

## 11. 기 타

-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및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
-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하며 횡령·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다음연도 사업 지원을 제한함
- 선정된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서 및 평가결과(사업실적, 보조금 집행내역, 평가등급)를 서울시 NGO협력센터 등에 게재할 예정임
- 사업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우리 시로 귀속됨
- 제출하신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심사를 위해 추가서류가 필요할 시 자료 제출함

## 12. 문의처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실(☎02-2133-6383~4)로 문의바람